

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3. 11. 28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3. 강남구청장(문화도시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11. 28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출연내용

- 출연기관 : 강남문화재단
- 출연내용 : 강남문화재단 조직 및 자체사업(기존사업) 운영
- 출 연 금 : 금7,150,731,000원(금칠십일억오천칠십삼만일천원)
 - 조직운영 출연금 : 금2,035,185,000원
 - 사업운영 출연금 : 금5,115,546,000원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○ 소요예산(출연금) 산출내역 및 사업개요(별첨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동의안은 강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과 강남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업비 출연을 사전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본 강남문화재단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으며, 본 조례 제24조(운영재원 등)에 의하면, “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” 고 되어 있음.
-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제1항에 따라 강남구로부터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사업)상의 사업추진을 위해 출자금·출연금보조금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.
- 본 동의안은 이러한 법령등을 근거로 해당 부서는 2024년도 재단운영과 사업비를 위한 출연금 7,150,731천원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-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·복지 증진 관련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이나, 내년도 예산액 “증가폭”은 전년 대비 약 5억원 규모가 줄어든 것임.
- 현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예산의 심의·확정과 결산승인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구의회 심의 대상으로 구청 전 부서는 모든 예산안 형식으로 제출하고 있음.
- 강남문화재단은 전년도 이월금과 운영수입금을 출연금 지원사업 부족분으로 충당하고, 임의·자율적으로 4개 사업에 이월금을 충당하여 추진하고 있는데, 이 이월금(28억56백만원)은 실질적으로 구청의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의 재원이 아닌 잉여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임.
- 본 동의안은 구의회가 출연금이 과다한지 부족한지 등을 동의안을 통해 개략적으로라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해당 사업들의 출연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임. 따라서,

강남문화재단 전체 예산(자체사업)과 연결되는 출연 동의안은 전후 수입과 지출의 맥락을 알 수 있어야 타당성이 있지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, 동의안의 의결은 형식적으로 흘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임.

- 이는 타지자체는 물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나 강남복지재단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예산안을 별도로 제출받거나, 수탁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내역을 출연 동의안 부속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- 예산(자금)의 수입과 지출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예산안 심의 등은 지방의회 예산 심의와 확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. 끝.